



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

2026.10.30

안녕하십니까, 법무법인(유) 세종 기업·금융분쟁그룹입니다.

저희 그룹은 기업상사 분쟁, 경영권 분쟁, 회생·도산, 금융 분쟁 및 기업형사사건 등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10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- **주요 판결** : 2026년 9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기업·금융분쟁 분야 대법원 주요 판결
- **이슈 소개** : 김동규 변호사의 ‘회생·파산 이야기’ (제10편)
- **승소사례 소개** : 기업금·용분쟁그룹의 최근 승소사례 안내

본 뉴스레터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26년도 9월 판례공보 중 기업·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

- ▶ **대법원 2026. 7. 9. 선고 2025다215725 판결 (key word : 회생절차, 이익채권, 소송수계신청, 하자의 치유, 채무자회생법 제172조)**
회생채권자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, 소송 계속 중 수계요건이 충족되고 상대방이 그 적법성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는 등 회생절차에 지장이 없는 반면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사례
- ▶ **대법원 2026. 7. 16. 선고 2025다212617 판결 (key word : 전문투자형 사모펀드, 메자닌 대출, DIL, 설명의무, 투자자보호의무, 전문투자자)**
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메자닌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사모펀드 수익증권 판매에서 대주간 약정상 DIL 관련 조항*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의 손실과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·착오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
* 기한이익 상실 시 선순위 대출의 차주가 선순위 대주에게 담보권 실행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조항 (Deed in Lieu of foreclosure)
- ▶ **대법원 2026. 7. 16. 선고 2026다201337(본소), 2026다201338(반소) 판결 (key word :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, 권리금 회수 방해, 현저히 고액의 차임, 손해배상, 감정)**

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요구한 차임 및 보증금이 '현저히 고액'인지는 기존 차임 및 보증금과의 차이, 상가건물의 시세와 적정 차임,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, 그 요구액이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이를 심리한 다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

2. 이슈소개

▶ 김동규 변호사가 들려드리는 회생·파산 이야기(10)

법무법인(유)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 도산팀 김동규 변호사입니다.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한해 매달 도산절차를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였습니다,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. 업무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남은 이야기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- “10호 : 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안(1)”

3. 승소사례 소개

기업금융분쟁그룹이 수행하던 사건 중 최근 승소한 사례들을 소개드립니다.

- ▶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른 위임만으로는 ‘5% 룰’상 공동보유자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어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(대법원 2026. 9. 10. 선고 2026다200657 판결)
- ▶ 토지신탁 수탁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·조언의무의 한계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관철하여 시행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

관련구성원

최창영

대표변호사

02-316-1947

cychoi@shinkim.com

이원

변호사

02-316-4406

wlee@shinkim.com

문희춘

변호사

최복기

변호사

02-316-4051
hcmoon@shinkim.com

02-316-1613
bgchoi@shinkim.com

이숙미

변호사

02-316-4016
smlee@shinkim.com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